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및 관리자 등에 대해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주차장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부령 제1388호, 2024. 9. 2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기준을 추가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신청·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의 항목과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차장치의 종류)”를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장의 제목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

사”로,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2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표를 각각”을 “검사표를,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표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규칙 제16조의8제1항제3호제나목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정밀안전검사”를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교육기관의 요건) 규칙 별표 1 비고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무실: 규칙 별표 1에 따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출 것

나. 강의실: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갖출 것

제19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제16 및 제16조의제18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제16 및 제16조의제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자체점검

제21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정밀안전검사

제22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으로 하고, 제3항 중 “별지 제2호의1”을 “별지 제2호의2”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19조) 중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0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수시검사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검사시기 :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유효기간 : 없음
- 검사내용 : 변경 및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 등의 적합성 검사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류 및 검사장비·관능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 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 기수를 선정한다.

다.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로 다음 기준에 의한 실검사 개소를 선정한다.

- 1) 검사개소가 20개소 이하이면 2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 2) 검사개소가 20개소 초과하면 10개소 초과시마다 1개소 추가 선정

라. 변경 및 요청된 검사항목은 제출된 서류상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수시검사를 요청한(대수 변경, 차량제원 변경 등) 경우 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검사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른다.

3. 수시검사 세부 기준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가. 주요 구동부	전동기	1) 기동전류는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에는 600% 이하, Y-△기동인 경우에는 200% 이하, 저항 및 리액터기동일 경우에는 300% 이하, 가변전압·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설계에 적용한 규격이하, 직류전동기인 경우에는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의 125% 이하이고, 순시치는 3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기동시간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50% 이내일 것 3) 전동기 외함 접지가 되어 있으며, 전선의 결선상태가 적정할 것	규정 별지제3호 서식 (기계장치 검사표)에 기록한다																						
	감속기	1) 감속기와 감속기 받침대의 고정이 견고하고 전동 또는 구동장치와의 연결 상태가 적절하고 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을 것 2) 감속기 케이스가 균열 및 손상이 없을 것 3) 감속기 윤활유의 누유가 없을 것																							
	제동 장치	1) 작동 시 이상 진동이나 소음·발열 또는 누유가 없을 것																							
	전동 장치	1) 벨트의 장력상태가 양호할 것 2) 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체인의 연결상태가 양호할 것 3) 체인, 스프로킷,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는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4) 개방치차의 면압강도는 설계기준의 80% 이상일 것 5) 전동축의 지름은 설계치의 98% 이상이고, 고정 및 정렬상태가 양호할 것	규정 별지제5호 서식 (재료의 규격검사표) 및 규정 별지제6호 서식 (와이어로프 검사표)에 기록한다																						
	구동 장치	1) 구동축 지름은 설계치의 98% 이상이고 정렬상태가 양호할 것 2) 베어링 및 커플링 등 주요부의 볼트조임이 견고하고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3) 시브(드럼)의 직경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 이상일 것(제5조제7항) <table><tr><td rowspan="3">구분</td><td colspan="4">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td><td colspan="2">기 타</td></tr><tr><td colspan="2">시브</td><td colspan="2">트랙션시브</td><td rowspan="2">1/4이하 접촉</td><td rowspan="2">1/4초과 접촉</td></tr><tr><td>승강구동</td><td>수평이동</td><td>승강구동</td><td>수평이동</td></tr><tr><td>시브 (드럼) 직경</td><td>로프 직경의 30배 이상</td><td>로프 직경의 20배 이상</td><td>로프 직경의 40배 이상</td><td>로프 직경의 30배 이상</td><td>로프 직경의 12배 이상</td><td>로프 직경의 20배 이상</td></tr></table> 4) 로프는 와이어로프 취급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연결장치의 효율은 2단식 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80% 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 이상일 것.		구분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기 타		시브		트랙션시브		1/4이하 접촉	1/4초과 접촉	승강구동	수평이동	승강구동	수평이동	시브 (드럼) 직경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	로프 직경의 20배 이상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
구분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기 타																				
	시브		트랙션시브		1/4이하 접촉	1/4초과 접촉																			
	승강구동	수평이동	승강구동	수평이동																					
시브 (드럼) 직경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	로프 직경의 20배 이상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	로프 직경의 30배 이상	로프 직경의 12배 이상	로프 직경의 20배 이상																			

검사항목		검사기준	비고										
		다만,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전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같다. <table><tr><td>연 결 방 식</td><td>효 율</td></tr><tr><td>합 금 고 정</td><td>100%</td></tr><tr><td>크 립 고 정</td><td>80%</td></tr><tr><td>쇄 기 고 정</td><td>65%</td></tr><tr><td>로 크 고 정</td><td>95%</td></tr></table>	연 결 방 식	효 율	합 금 고 정	100%	크 립 고 정	80%	쇄 기 고 정	65%	로 크 고 정	95%	
	연 결 방 식	효 율											
합 금 고 정	100%												
크 립 고 정	80%												
쇄 기 고 정	65%												
로 크 고 정	95%												
유압 장치	1) 유압장치의 로드·실린더 직경은 설계치의 98% 이상일 것 2) 유압장치의 누유가 없을 것												
나. 운반기		1) 기름 등이 낙하하여 하단의 자동차를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일 것 2)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경사진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할 것(제10조제3항) 3)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 이하일 것(제10조제4항)	규정 별지제5호 서식 (재료의 규격검사표)에 기록한다										
다. 주차철골		1) 칼럼이나 빔과의 연결·체결 및 고정상태가 양호할 것 2) 볼트의 이완 및 탈락이 없고, 주차철골의 균열이 없을 것											
라. 시운전		1) 주차장치의 자동운전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2) 운전 시 이상진동 및 소음이 없을 것											
마. 기타		1)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및 브레이크는 눈·비 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함(제13조제4항) 2)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출입구 및 안전장치	출입문 있는 경우	○ 출입문 상태	· 출입문의 작동상태 및 이상소음 확인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힌 후 작동되는지 확인 ·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 확인
		○ 출입문이 2개인 경우	·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 확인
		○ 진입금지 신호장치	·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등의 설치 및 점등 상태 확인
	출입문 없는 경우	○ 작동중 접근시 정지장치	·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출입구 안으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기동벨	· 주차장치의 작동을 알리는 기동벨의 작동상태를 확인
	○ 작동 스위치		·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 보존 및 관리 상태 확인
	○ 수동정지장치		· 주차장치의 운전조작반에 기계장치의 이상발생 및 비상시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운반기내 정위치정차장치		· 운반기내 적정제원(길이, 너비, 높이) 초과시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적재물 등		· 기계식주차장 내부(출입구 내부, 운반기 등)에 적재물 등 간섭물 확인
기 타	○ 시운전		· 운전 시 이상소음 및 진동 확인
	○ 동작 완료 시 운반기 위치		· 주차장치의 동작이 완료된 때에 운반기가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는지 확인
	○ 경계시설 등		·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고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울타리 등 적절한 경계시설 상태 확인 · 출입구 내부에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 또는 추락 위험 공간이 있는지 확인
	○ 조명시설(출입구 내부)		·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상태 확인
	○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 부착		·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이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되었는지 확인 ·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 수용 가능한 자동차 제원 등 표기 확인

별지 제2호의1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1서식]

기계식주차장수시검사서						
주차장치		①종류및방식				
		②인증번호				
③제작사(보수사)						
④기계식주차장관리자						
⑤기계식주차장소재지						
변경내용						
⑥항목		⑦변경전		⑧변경후		
수시검사결과						
검사항목		결과	비고	검사항목	결과	비고
⑨주요구동부	전동기			⑩운반기		
	감속기			⑪주차철골		
	제동장치			⑫시운전		
	전동장치			⑬기타		
	구동장치					
	유압장치					
비고 : 검사결과는 "적", "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				검사일자	년 월 일	
				검사책임자		
				검사원		
첨부서류 : 1. 기계장치 검사표 2. 재료의 규격 검사표 3. 와이어로프 검사표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교육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상호(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에1항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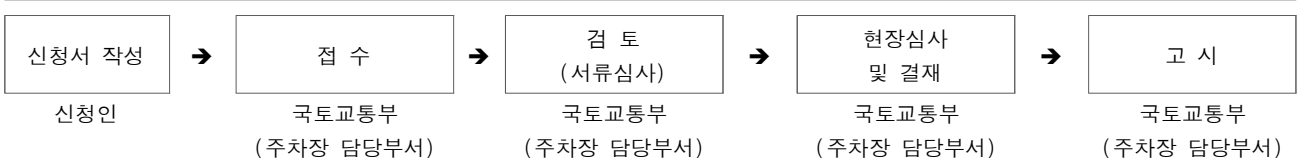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상기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안전기준과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6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4장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제4장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신 설>

<신 설>

제18조(교육기관의 요건) 규칙 별표 1 비고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무실: 규칙 별표 1에 따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추는 것

나. 강의실: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는 것

제19조(교육기관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신청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직 및 인력운영, 교육 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분야,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강의계획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의 교육업무 운영에 필요
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법인이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
었는지 확인하고, 교육기관으로
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고시하
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
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원활한 교육 시
행을 위해 지사(지부) 또는 출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규
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
14, 제16조의제16 및 제16조의제18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규칙 별표 1 및 제18조의 요건
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운영 등) ①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제14,
제16조의제16 및 제16조의제18에 따
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
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
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자체점검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① 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
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
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
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
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
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
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
의 관찰

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
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
우: 긴급 수리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 1항제2호에 따라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자체 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 1항제3호에 따라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생 략)

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

제7장 정밀안전검사

제22조(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① -----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2호의2-----

서와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협조) 규칙 제16조의8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
기검사를 신청한 자와 규칙 제1
6조의2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
검사를 신청한 기계식주차장관
리자등은 검사대상 기계식주차
장에 대하여 원활히 검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검사협조) -----
-----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

제24조(재검토기한) -----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